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4 년 1 월

[세법개정](#) | [과세관청 소식](#) | [예규·판례](#) | [Contacts](#)

• 예규·판례

가. **한중조세조약 이중과세 회피규정의 직접 적용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23 두 44634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2024. 1. 11.)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원고는 2014 년부터 2017 년까지 외국자회사들로부터 배당금 등을 수취하였는데, 위 배당금 등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 등(이하 '외국납부세액'이라 한다)에 관하여 구 법인세법(2017. 12. 19. 법률 제 1522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57 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

하지 않은 채,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원고는 2020. 2. 7. 피고에게, 2014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전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손금산입 방법을 적용하고, 2015 내지 2017 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중국 자회사들로부터 수취한 배당금과 관련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세액공제 방법을 적용하여 각각 계산한 세액과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 합계 1,549,721,453 원(가산세 포함)의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6.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
- 이후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함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외국납부세액을 같은 기간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로 하여, 2020. 10. 27. 당초처분 중 해당 세액 부분(가산세 포함)을 직권으로 취소한 후 원고에게 환급하였다.

■ 조세조약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제 1, 2 상고이유)

- 1994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은 제 23 조 제 1 항에서 한국 거주자의 이중과세 회피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2006년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의 제 2 의정서」 제 4 조(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가 이를 대체하였다. 이 사건 규정에 따르면, ‘한국 외의 국가에서 납부하는 조세에 대하여 한국의 조세로부터 세액공제의 허용에 관한 한국세법의 규정(이 항의 일반적인 원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가목에서는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에 관하여, 직접적이든 공제에 의하여서든 중국의 법과 협정에 따라 납부하는 중국조세(배당의 경우 배당이 지급되는 이유에 대하여 납부할 조세를 제외한다)는 동 소득에 관하여 납부하는 한국조세로부터 세액공제를 허용하나, 그 공제세액은 중국 내에서의 원천소득이 한국의 조세납부 대상이 되는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한국의 조세액의 부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목에서는 ‘중국 거주자인 회사가 한국 거주자이면서 동 중국회사 주식의 10 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회사에게 지급하는 배당의 경우,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이 항 가목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 허용되는 중국의 조세에 추가하여) 배당을 지급한 동 중국회사가 동 배당을 지급하는 이익과 관련하여 납부하는 중국조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 57 조 제 1 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① 공제한도의 범위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세액공제 방법)과 ②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손금산입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지방세법은 2014. 1. 1. 법률 제 12153 호로 개정되면서 내국법인의 소득에 관한 지방세 과세체계가 종래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10%'의 세율을 적용하는 부가세 방식(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세율의 10%'를 세율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법인지방소득세)으로 변경되었다. 위 개정 지방세법은 제 103 조의 22 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규정하였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 이 사건 규정의 내용과 문맥, 조약의 대상과 목적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규정만으로 체결국의 의사에 따라 외국납부세액의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규정은 한국 거주자가 이중과세를 회피하는 방법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를 허용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공제방법이나 공제범위 등에 관하여는 한국 세법에 따르도록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중과세를 조정함에 있어 어느 정도의 공제와 한도를 둘 것인지 등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될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부여되어 있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 공제제도만으로 외국납부세액의 이중과세가 완전히 회피되지 않더라도,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지방소득세액에서 중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다.
-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일부 부적절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세조약의 해석방법이나 이 사건 규정의 해석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제 3 상고이유)

- 원심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 시 익금에 산입한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차감하는 것 외에 간접외국납부세액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간접외국납부세액에 대한 추가 손금산입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리미진의 잘못이 없다.

나. 건물의 건축으로 인한 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시기 (2020 두 49997, 취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2023. 12. 28.)

■ 사안의 개요

-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주식회사 오성빌딩과 오성주택 주식회사(이하 모두 '소외 회사'라 한다)가 건축 주로서 신축 중이던 통영시 (지번 생략) 지상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4. 17. 가압류등기촉탁에 따른 소외 회사 명의의 소유 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 소외 회사는 2017. 3.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한 다음 2017. 4. 21. 원고와 이 사건 건축물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및 신탁등기를 마쳐주었다.
- 피고는 2017. 6. 2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였다
- 원고는 2017. 8. 24. 피고에게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를 신고하고, 2017. 10. 24.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함께 납부하였다.
-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건축물의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소외 회사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관련 규정

-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 16854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34 조 제 1 항 제 1 호는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지방세법(2017. 12. 26. 법률 제 15292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6 조 제 1 호는 '취득'을 '건축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으로 정의하면서 그 괄호에서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를 원시취득에서 제외하는 한편, 제 7 조 제 1 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2 항 본문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구 지방세법 제 10 조 제 7 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2. 9. 대통령령

제 28627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0 조 제 6 항 본문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시기에 관하여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조 제 13 항은 ‘제 1 항, 제 2 항 및 제 5 항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 관한 제 6 항을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 판단

- 이러한 관련 규정의 체계와 문언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이 그 건축물의 취득일이 되고, 당시의 건축물 소유자가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건축물의 취득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비록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고 그 건물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였다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
- 그런데도 원심은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춘 시점에 취득세 등 납세의무가 성립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소외 회사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취득세 등 납세의무의 성립요건 및 납세의무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3 전 7051, 2023. 12. 27.)

■ 처분개요

- 청구법인은 2014.11.1. 개업하여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면 000 에서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이고,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 AAA 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 에서 000(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라는 상호로 피부미용기기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이다.
- 청구법인은 (1) 000 외 다수의 특정거래처와 매출액 목표 달성 및 대금결제 100% 완불 등의 조건 성취에 따라 매출액에 일정할인율을 적용하는 추가 거래

약정(이하 “쟁점할인약정”이라 한다)을 맺고, 위 거래처에 의료용 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그 공급대가에서 쟁점할인약정에 따른 약정금액을 할인(이하 “쟁점할인금액”이라 한다)하여 준 후, 아래 <표 1>과 같이 쟁점할인금액이 차감된 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 쟁점거래처에 피부미용기기 등 일부품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판매하였다.

- 대전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4.7.부터 2022.6.17.까지 청구법인의 2017 ~ 2021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 청구법인이 2017년 제 2 기부터 2021년 제 2 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 쟁점할인금액을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쟁점거래처에 시가보다 저가로 판매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아래 <표 2>와 같이 판매단가와 시가(제 3 자에게 판매한 평균단가, 이하 “제 3 자 거래가액”이라 한다)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겠다는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였으며,
-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2.9.26. 청구법인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2017년 제 2 기부터 2021년 제 2 기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000 원, 2017 ~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00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2.11.15. 이의신청을 거쳐 2023.2.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쟁점

- 쟁점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판단

- 청구법인의 설립 및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2014.11.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 이 운영하던 동방침구제작소를 법인전환하여 설립된 후, 충청남도 보령시 000 에서 의료용 기기 등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7 ~ 2021년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내역은 아래 <표 8>과 같다.
- 청구법인은 아래 <표 9>와 같이 한방의료기기, 필러, 매선 등 바이오 의료기기, 미용기기, 화장품 등을 제조·판매하고 있고, 그 중 미용기기의 경우 대부분 쟁점거래처에 위탁·판매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대상 기간 평균매출액 비중이 1.2% 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의 설립 및 사업 현황은 아래와 같다.
-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BBB의 배우자 AAA가 2007.8.1. 개업하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에서 미용기기 등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종업원으로 영업팀(딜러, 병원 등 방문하여 영업활동 수행), 영업관리팀(견적서 작성, 발주 등 영업활동 지원), 물류관리팀(재고관리 및 물류활동 수행), 회계관리팀(세무 및 회계업무 수행), 홍보관리팀(브로셔 제작 및 마케팅 자료 작성) 각 1명 총 5명인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의 2017~2021년 총 매출액(연간 약 000원) 대비 청구법인으로부터의 매출이 아래 <표 11>과 같이 약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할인약정 등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청구법인은 생산제품 중 한방제품(한방 침, 부항컵)에 대하여 쟁점할인약정을 체결하여 매출액의 일정 비율로 할인하여 주고 있고, 2018~2021년 중 총 매출액 대비 침·부항 매출액, 쟁점할인약정 체결 업체에 대한 매출액 비율은 아래 <표 12>와 같다.
- 쟁점할인약정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거래처와 작성한 추가거래약정서에 따르면 월별 또는 분기별 판매 목표를 제시하고, 월별 약정 판매구간을 설정하여 구간별 매출액을 달성하는 경우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하여 주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 대표이사 BBB의 확인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2021년 중 일부 약정거래처(주식회사 AAA, (주)BBB)와 쟁점할인약정을 체결하면서 일정 매출액 이상의 거래실적을 달성하는 경우 현물(한방 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주)CCC에게 2019~2021년 중 합계 000원(시가)의 현물(한방 침)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거래처에 물품을 공급하고 계정별원장에 미수채권으로 계상하였다가 월말 할인을 적용한 후 공급가액, 공급대가 등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매월 말 쟁점할인금액을 차감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국내영업부 직원은 판매장려할인 정책이 적용되는 거래처의 기준, 판매장려할인 정책 운용 방법 등과 관련하여 ① 평균매출액·회사상황·재고상황·지역특색·경쟁정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판매장려할인 정책이 적용되는 거래처를 선정하고, ② 판매장려할인 정책은 청구법인 재화의 판매촉진 및 거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월 매출액을 합산하여 약정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결국 단가가 하락되는 효과가 있으며, ③ 매출거래처 중 매출빈도나 금액 등을 고려하여 주거래처에 대하여 판매할인약정을 체결하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직원의 날인 거부로 날인되지는 않음).
- 조사청은 청구법인의 전산자료를 기준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쟁점거래처 이외의 업체에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판매한 쟁점물품의 품목별 수량 및 평균단가를 산정(예시 : 000의 경우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는 000원, 제 3자에 대한 매출단가는 000원)하여 쟁점거래처에 대한 매출단가가 쟁점거

래처 외의 제 3 자에 대한 매출단가 대비 약 50% 내외(000) 등인 것으로 조사하였다.

- 청구법인 직원의 진술서(문답형) 의하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매출거래와 관련하여 총판계약서 또는 판매계약서 등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품목별 판매단가 산정의 근거자료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익율이 조사대상 기간 중 -3.0%(2019년) 내지 4.5%(2021년)로 조사대상 기간 평균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청구법인은 한방제품 외에 피부미용기기를 제조·판매하고 있고, 조사대상 기간 중 쟁점거래처에 대한 피부미용기기 주력상품(000 등)의 공급물량이 평균 9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피부미용기기를 쟁점거래처를 통해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제 3 자에 대한 피부미용기기 판매물량을 살펴보면 해당 제 3 자에 대한 주거래 품목은 의료기기이고, 피부미용기기 거래금액은 주거래 품목 대비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다.
-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 먼저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건대, 처분청은 쟁점할인금액 전체를 판매장려금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 「부가가치세법」 제 29 조 제 1 항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같은 조 제 5 항 제 1 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대법원 2003.4.25. 선고 2001 두 6586, 6593, 6609, 6616, 6623, 6630, 6647, 6654, 6661 판결,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 두 19615 판결 등, 같은 뜻임)할 것인바,
-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쟁점할인약정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수량·매출액 등 공급조건에 따라 재화의 공급대가에서 일정률을 직접 깎아주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거래상대방이 위 약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구법인으로서는 일정률을 할인하여 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청구법인은 미리 정하여진 판매단가에 따라 의료용기기 등을 공급하면서 위와 같이 할인약정을 체결한 거래상대방에 대하여는 거래상대방이 월별 판매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 해당 할인약정에 따라 그 판매가액에서 일정률을 할인하여 주어 할인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받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특히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쟁점할인금액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였고 거래상대방 또한 이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하여 청구법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쟁점할인약정을 에누리 약정으로 인식하고 이에 따른 할인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또는 매입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할인금액 중 청구법인이 재화를 공급하면서 쟁점할인

약정에 따라 공급당시 월별 판매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준 금액을 판매장려금으로 본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다만 앞의 <표 3>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의 월별 또는 분기별 거래실적에 따라 일정률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다음 월 또는 분기 이후에 해당 거래처에 대한 외상매출채권 잔액에서 차감하여 준 경우, 공급당시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공급대가를 직접 깎아준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해당 할인액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 다음으로 쟁점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인세법」 제 52 조에서 규정하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 기타 경제적으로 합리성 있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 88 조 제 1 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이고,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하는 것인바(대법원 2018.7.26. 선고 2016 두 40375 판결, 같은 뜻임),
- 청구법인이 제 3 자 공급가액보다 저가로 쟁점물품을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공급한 사실은 있으나, 청구법인은 피부미용기기 판매와 관련한 별도의 판매부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쟁점거래처는 피부미용기기를 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어 청구법인이 생산하는 대부분의 피부미용기기를 매입하여 판매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사업형태나 사업목적상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사실상 총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거래처의 영업이익율이 조사대상 기간 평균 0.5% 에 그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은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 거래구조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에 총판 할인율을 적용하여 쟁점물품을 공급한 데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처분청이 시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제 3 자 거래가액은 청구법인이 한방제품을 판매하는 일부 거래처에 추가로 피부미용기기를 일부 판매한 것과 관련한 공급가액으로, 청구법인 생산 물량 대비 제 3 자 공급물량이 평균 3.8% 에 불과하고 일시적이고 비경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 이를 쟁점물품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쟁점거래처에 제품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 여부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 2024.01.02.)

■ 질의 요지

- 「근로복지기본법」 제 50 조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품은 전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한 과세특례’ 적용 방법 (국제조세제도과-684, 2023.12.13.)

■ 질의 요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34 조의 2 에 따른 국외투과단체가 같은 법 시행령 제 70 조의 2 제 1 항 본문의 해당 국외투과단체가 설립되었거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는 국가의 법률에 따라 개인과 법인의 소득 전부에 대해 납세 의무가 없는 경우, 출자자등인 거주자에 대해 같은 법 제 34 조의 2 제 2 항의 적용에 있어 같은 조 제 6 항에 따른 국외투과단체에 귀속되는 소득의 소득구분은 해당 거주자가 국외투과단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투자하였을 때 동일하게 발생하였을 소득구분을 의미합니다.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4.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